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 규정

제정	1967. 10. 21.	규칙 제 94호
개정	1976. 4. 13.	규칙 제 399호
	1978. 4. 21.	규칙 제 483호
	1992. 3. 18.	규칙 제 861호
	1997. 12. 23.	규칙 제 1081호
	2001. 4. 6.	규칙 제 1180호
	2006. 2. 27.	규칙 제 1531호
	2016. 12. 28.	규칙 제 205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(이하 “수목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국내외에 분포된 수목의 수집, 식재, 전시 및 연구
2. 멸종위기 및 희귀식물의 유전자원 보존, 증식 연구
3. 식물자원 및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활동과 유용식물자원의 증식, 보급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
4. 수목의 피해 진단과 치료

제3조(원장) 수목원에 원장을 두되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조직) ① 수목원에 연구부, 식물표본관, 관악수목원, 수원수목원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연구부에는 부장을, 식물표본관에는 관장을 두며,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부, 식물표본관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연구부는 국내외의 수목 및 기타 식물에 관한 연구, 교육, 홍보 및 연구지 발간에 관한 사항
2. 식물표본관은 국내외 식물자원의 수집 및 교환, 표본의 제작관리, 식물자원 정보

자료에 관한 사항

3. 「삭제」

4. 행정실은 보안, 관인관수, 서무·회계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사항

제5조 [삭제]

제6조(연구원) ① 수목원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약간인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, 보조연구원은 조교 이상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또는 법인 5급 이상의 농림식품직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연구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항을 연구하고 보조연구원은 연구원을 보조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수목원의 운영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학장, 학술림장, 산림과학부장, 행정실장 및 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수목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[삭제]

부칙(제94호, 1967.10.21.)

이 규정은 196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99호, 1976.4.13.)

이 규정은 197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83호, 1978.4.21.)

이 규정은 197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861호, 1992.3.1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(제1081호, 1997.12.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180호, 2001.4.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1531호, 2006.2.2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056호, 2016.12.2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